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22. 11.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4.3.20.



〈차 례〉

I. 통계개요	1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5
III. 통계 설계	9
IV. 자료수집	15
V. 통계처리 및 분석	18
VI.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23
VII. 통계기반 및 개선	35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귀농어·귀촌인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개요

1. 통계명

귀농어·귀촌인통계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
 - 통계 승인번호 : 제930002호(2012. 6. 21.)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제②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 귀농어·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3. 통계작성방법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21종의 행정자료를 연계 및 활용하여 작성
 - (모집단) 주민등록자료
 - (귀농인)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대장,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귀어인) 어업허가등록명부, 어업면허등록명부, 양식업허가등록명부, 어업신고등록명부, 내수면어업등록명부, 수협조합원가입명부, 수협조합원탈퇴명부,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전자어업허가증명부, 소금제조업허가명부, 어장관리선등록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귀촌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통계청(농어업통계과),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공동 작성

5. 공표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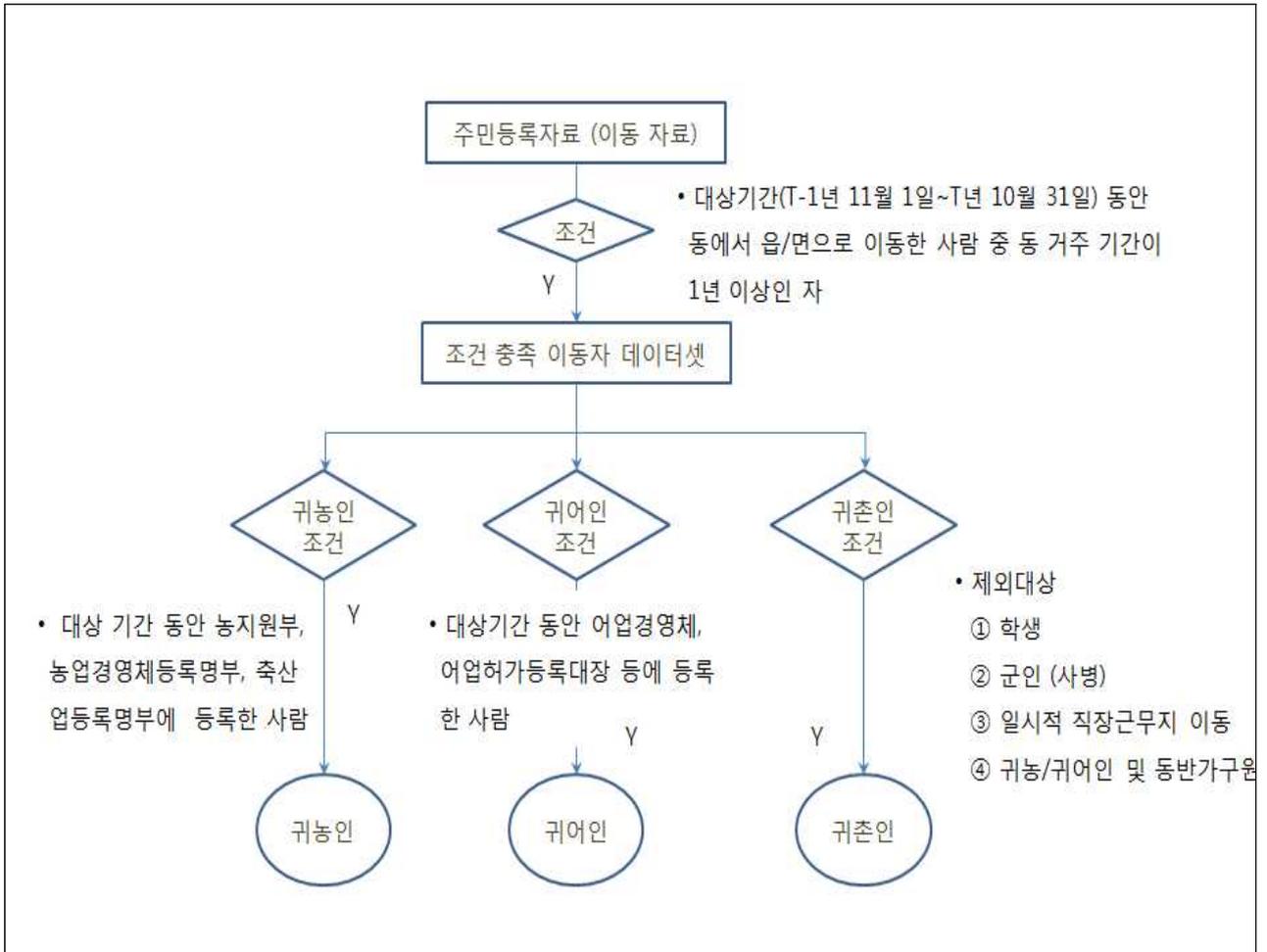
- 1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통계작성과정 일정

업무단계	주요 추진업무	추진일정
① 통계 개선관련 자료수집	○ 공표(매년 6월) 이후 개선을 위한 언론, 이용자 등 자료수집	7~12월
↓		
② 전문가·관련기관 의견수렴	○ 작성항목 및 통계표 등 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9~3월
↓		
③ 행정자료입수·속성분석·단계별 DB 구축	○ 국내인구이동 등 행정자료 21종을 입수하여 식별키, 항목오류 등 속성 분석 및 DB 구축	11~4월
↓		
④ 통계작성 계획(안) 수립	○ 활용 행정자료 및 작성항목 등 금년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통계작성 계획(안) 수립	1~5월
↓		
⑤ 결과표 집계·수준분석	○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통계별KOSIS용 결과표 집계	1~5월
↓		
⑥ 통계작성 변경승인	○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작성항목 및 통계표 변경 등에 대하여 통계작성 변경승인	6월
↓		
⑦ 작성결과 공표 및 KOSIS 서비스	○ 작성결과 공표 ○ KOSIS 서비스 실시	6월

□ 통계작성과정



6. 통계연혁

□ 최초 개발시기 및 개발배경

○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1년 기준 귀농인통계 신규 작성 승인('12.6월, 통계청)

○ 개발 배경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이 증가
- 귀농인통계는 200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나 일부 지자체가 조사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등 조사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현장조사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귀농인통계를 신규 작성

□ 통계의 변경 및 개편 이력

○ 2012년 기준 귀농·귀촌인통계 공표('13. 3월)

- (개편 방향) 귀촌 부문 작성사항 추가에 따른 명칭 및 작성항목 등 변경
 - * 귀농인통계는 통계청, 귀촌인통계는 농림부에서 각각 작성

○ 2015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공표('16.6월)

- (개편 방향) '15년 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통계 작성, 법률에 따라 귀어인 통계 추가 및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부가조사 실시
- 과거 개념 및 작성 방법과의 차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귀 농 인	개념	대상기간동안 동에서 읍·면 이동자 중 농업경영체, 축산업명부, 농지원부에 등록한 자	“동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 추가
	작성방법	행정자료 기반	좌동
귀 촌 인	개념	대상기간(1.1.~12.31.)동안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자는 제외	1년 이상 동 거주자가 대상기간(T-1.11.1.~T.10.31.)에 읍·면으로 이동한 경우 단,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변경에 따른 일시적 이주, 귀농어인·동반가구원은 제외
	작성방법	지자체를 통한 조사	행정자료 기반

* 귀어인 항목은 '16년 공표시부터 신규 작성

○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공표('17.6월)

- (개편 방향) 정책 활용 실익이 없고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혼합가구의 농가·비농가, 어가·비어가 항목 삭제

○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공표('18.6월)

- (개편 방향) 전입사유별 귀촌인 현황 제공
- 귀농인의 가축사육 현황 및 귀어인 업종별 분류 통계표 작성

○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공표('19.6월)

- (개편 방향) 귀농어·귀촌인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제고를 위해 귀산촌인 통계작성 및 귀어인 업종분류를 표준분류인 해양수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의 작성목적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귀농어·귀촌인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여 귀농어·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된 활용분야

- 정부, 지자체, 국회 및 공공기관, 학계, 민간기관, 연구소 등에서 귀농어·귀촌인 관련 정책수립·평가, 연구 분석 등에 활용
 -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귀농·귀촌 지원 종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40세 이하 귀농어인의 분석을 통해 청년 농어업인 정착자금 지원사업의 예산규모 책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귀농어·귀촌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성과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 귀농어·귀촌인의 지역별 인구 유입을 분석함으로써 지자체별 농어촌 유입인구 증대 정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귀농어·귀촌인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에 활용

□ 국내·외 통계 간 사전 검토

- 행정자료 활용 관련법령 검토
 - 행정자료 활용 관련법령에는 통계법,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통계법에는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법률 제11553호, 2012.12.18. 일부개정).

< 통계법의 관련 조항 >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18.>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 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에서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81조의13 ①항 제5호. '09. 2. 6. 개정) 규정되어있다.

<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항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4. (생략)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 >

제8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이하 생략)

* 제3장~제7장 : 개인정보의 처리(개인정보수집, 인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단체소송

< 주민등록법의 관련 조항 >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 가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 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가족관계 관련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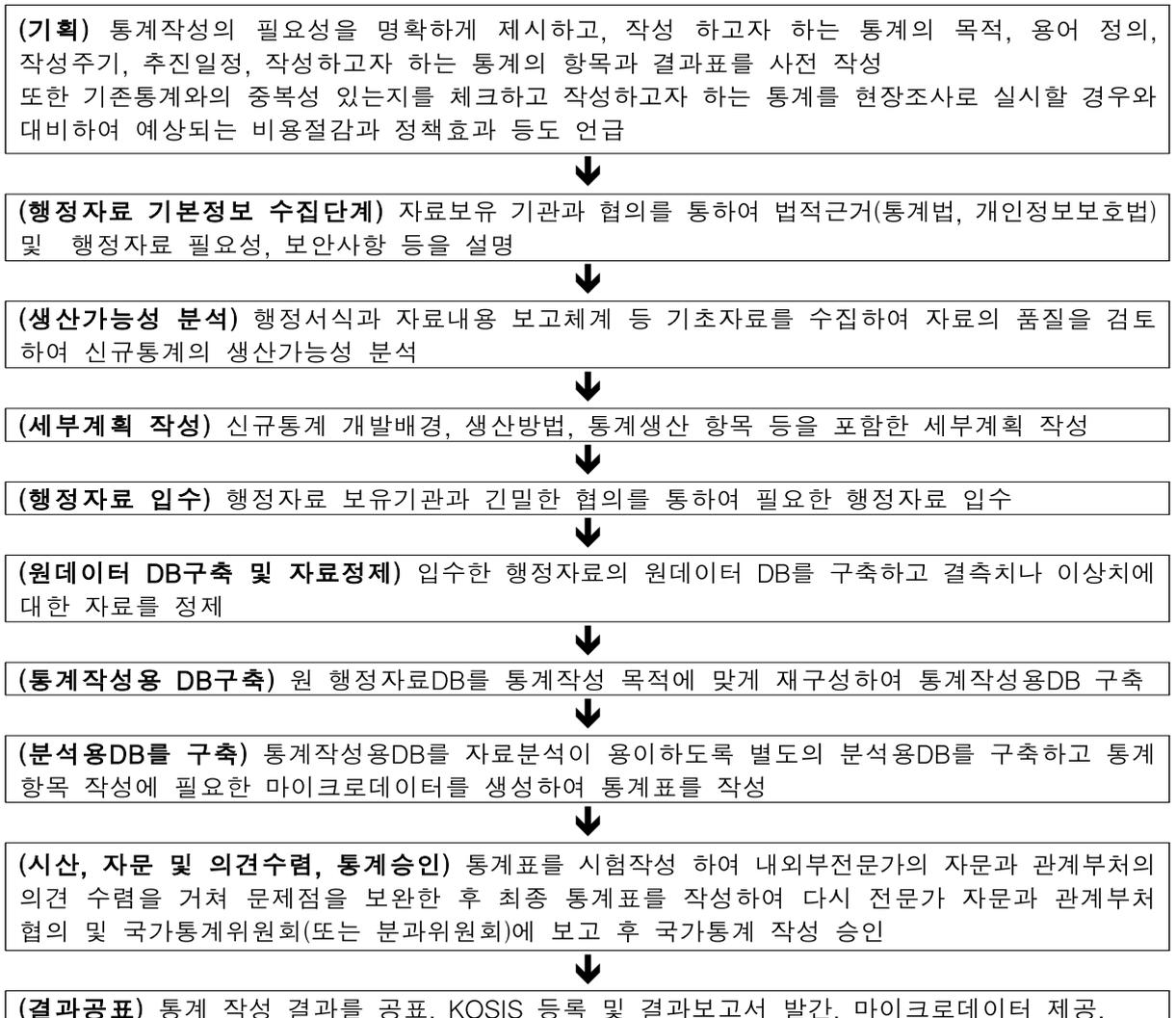
- 통계청은 행정자료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료 관련 시스템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한 업무전용망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예규, 2009.1.7)을 제정하여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활용에 있어서 개인, 단체 등의 식별자료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료관리책임자, 자료접근권자, 접속기록 관리, 보관 및 통제 등 보안에 관해 제규정을 마련하였다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절차 검토

- 신규통계 생산 절차

: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 통계 과정은 생산체계(기획~결과공표)는 유사하나 표본 설계에서 조사표 인쇄까지의 과정이 생략되는 대신에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 등 통계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자료를 편집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신규통계 생산 절차>



: 행정자료 이용시 유의사항으로는 이용할 자료의 포괄범위 문제, 이용할 자료의 분류상의 차이 문제, 행정 자료가 갱신되지 않거나 자료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 연결할 자료가 중복되거나 다중단위가 다수 포함되어 연결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우(1 : 1연결이 아닌 하나의 대상에서 여러 개의 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 연결할 자료의 시계열 유지가 힘든 경우 행정자료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기관과의 상호협의 등을 통하여 용어/분류간 일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대상자별 교육비 자부담 차등 지원 추진
 -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창업자금지원 등 확대
 - 귀농귀촌 희망자 증가에 따른 귀농귀촌 관련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제고
- 해양수산부
 - 귀어귀촌 지원종합계획(5개년 계획) 수립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지원규모 산출
 -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대상 선정 등
- 산림청
 - 귀산촌인(산촌내 귀촌인) 관련 정책 수립

Ⅲ. 통계 설계

1. 통계작성 기획

□ 통계작성대상(항목), 포괄범위 및 기준시점

- 통계별로 유사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 가구수, 이동현황, 구성형태, 겸업여부, 작물현황 등 6개 주제별 작성항목으로 작성

구분	작성항목	세부내용
귀농 귀어 귀촌 (공통)	가구원수	①시도별(시군별*) ②성별 ③연령별
	가구수	①가구의 시도별(시군별*), 성별, 연령별 ②가구원수별 ③가구구성(독립, 혼합) 형태별
	이동현황	①이동전 시도별 ②이동유형별(권역별 이동)
귀농·귀어	겸업여부	①전업, 겸업
귀농	작물·가축현황	①작물재배 가구수 ②평균재배면적 ③면적규모 ④경영형태(자경,임차) ⑤가축사육 가구수
귀어	업종별분류	①업종별 귀어인수
귀촌	전입사유	①전입사유별 가구수
	산촌여부	①귀산촌지역 통계 제공

※ 귀어인 통계는 시도별만 제공

○ 귀농어귀촌인통계의 포괄범위

- (모집단 포괄범위)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기간(매년 T-1년.11.1 ~ T년.10.31.)에 읍면으로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귀농인 포괄범위) 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기간에 읍면으로 전입한 사람 중 신규로 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어인) 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기간에 읍면으로 전입한 사람 중 신규로 어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촌인) 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기간에 읍면으로 전입한 사람. 단,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일시적 이동자, 귀농어인 및 동반가구원은 제외

○ 통계작성의 대상이 되는 모든 표는 매년 1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필요 자료의 시의성 및 수집 가능성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행정기관에서 자료 생산이 완료된 이후 투입자료를 제공받아 집계 및 분석을 하는 행정통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준 귀농어·귀촌인 자료가 익년도 6월에 공표되므로 시의성에 있어서는 적정함

<행정자료 입수 시기>

행정자료	입수 가능시기	참고사항
국내인구이동자료	1월 ~ 2월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	1월 ~ 3월	농업경영체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진행
어업허가등록명부, 어업면허등록명부, 양식업허가등록명부, 어업신고등록명부, 내수면어업등록명부, 수협조합원가입명부, 수협조합원탈퇴명부,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전자어업허가증명부, 어업허가지위승계명부, 소금제조업허가명부, 어장관리선등록명부	1월 ~ 3월	자료입수에 2개월 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3월 ~ 4월	
고용·산재보험 전근·전보신고서	1월 ~ 2월	자료입수에 1개월 소요

* 입수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다음의 23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데이터를 제공 받고 있어 자료의 수집은 용이함
 - 행안부(국내인구이동자료), 농식품부(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 농지대장), 해양수산부(어업경영체 등 12종),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단),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명단, 직장근무처 변동신고서), 고용부(피보험자 전근신고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전근신고서)

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 수집 가능 자료의 포괄성 검토

- 모든 귀농인, 귀어인 및 귀촌인을 포함하기 위해 행정자료의 포괄범위를 감안하여 21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작성
 - (모집단)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기간(매년 T-1년.11.1 ~ T년.10.31.)에 읍면으로 전입한 사람을 모집단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국내인구이동자료를 입수하여 포괄성 검증과정을 거침
 - (귀농인통계) 모집단 대상 중 신규로 농업인에 등록한 사람을 추출하기 위해 농림부로부터 농업인 명부 3종(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대장)을 입수하여 포괄성 검증과정을 거침
 - (귀어인통계) 모집단 대상 중 신규로 어업인에 등록한 사람을 추출하기 위해 해수부로부터 어업인 명부 12종(어업허가등록명부, 어업면허등록명부, 양식업허가등록명부, 어업신고등록명부, 내수면어업등록명부, 수협조합원가입명부, 수협조합원탈퇴명부,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전자어업허가증명부, 어업허가지위승계명부, 소금제조업허가명부, 어장관리선등록명부)을 입수하여 포괄성 검증과정을 거침
 - (귀촌인통계) 귀촌인은 귀농어인과 달리 등록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기간에 읍면으로 전입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므로 행안부의 인구이동자료에서 모집단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대상이 확정됨
단지, 모집단 중 귀촌인 비대상인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일시적 이동자, 귀농어인 및 동반가구원을 제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 등의 자료들을 입수하고, 귀농어통계 작성과정에서 추출된 귀농어인 및 동반가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포괄성 검증과정을 거침

□ 투입된 개별 자료의 통계적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15년에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정의된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을 개념을 준용하여 작성, 이를 위해 개념적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21종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활용
- 수집되는 행정자료는 신고에 기초한 전수자료로서 모집단 및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을 모두 전수자료를 기반으로 법적·통계적 정의에 맞게 추출하므로 통계적 타당성 및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투입자료 이용시 문제점과 한계점

- 도시와 농어촌의 법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의 괴리 발생
 -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실제 동 지역 중 농어촌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 통계 작성 시 도시는 동 지역으로,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간주
- 귀농어·귀촌인(가구)수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자료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상주하는 귀농어·귀촌인(가구)수와 다를 수 있음

3. 주요 개념 및 용어

□ 주요 개념 및 용어

- 귀농인/귀어인/귀촌인
 -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 (귀농인 조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 : (귀어인 조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명부(12종)에 등록된 사람
 -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 귀농가구/귀어가구/귀촌가구: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을 포함하는 가구
- 독립가구/혼합가구
 - (독립가구) 대상 기간 중 이동한 사람들만으로 가구를 구성한 경우
 - (혼합가구) 이동한 사람과 기존 거주민들이 함께 가구를 재구성한 경우

□ 주요 개념, 용어 등에 대한 국내기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4. 적용 분류체계

□ 적용 분류체계의 개요와 내용

- '15년 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법적 개념을 준용하여 작성
 - (모집단)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畝·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조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어인 조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5. 통계개편의 적절성

□ 최근 통계를 개편한 경우 주요 내용

- 2015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공표('16.6월)
 - '15년 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통계 작성

	구분	변경 전(법률 제정 전)	변경 후(법률 제정 후)
귀 농 인	개념	대상기간동안 동에서 읍·면 이동자 중 농업경영체, 축산업명부, 농지원부에 등록된 자	“동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 추가
	작성방법	행정자료 기반	좌동
귀 촌 인	개념	대상기간(1.1.~12.31.)동안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자는 제외	1년 이상 동 거주자가 대상기간(T-1.11.1.~T.10.31.)에 읍·면으로 이동한 경우 단,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변경에 따른 일시적 이주, 귀농어인 및 동반가구원은 제외
	작성방법	지자체를 통한 조사	행정자료 기반

* 귀어인 항목은 '16년 공표시부터 신규 작성

- 전원생활 등의 목적 없이 교육, 주택 등의 사유로 수도권 위성도시(읍·면지역)로 이주한 경우도 귀촌인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어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별 7개 항목자료를 추가 입수하여 귀촌가구의 전입사유별 현황을 작성

IV. 자료수집

1. 수집자료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목록

자료명	작성주기	작성대상(기관)	작성형태	입수시기
국내인구이동자료	연간	행정안전부	행정자료	익년 1~2월
농업경영체등록자료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농지대장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축산업등록명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허가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면허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양식업허가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신고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내수면어업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수협조합원가입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수협조합원탈퇴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전자어업허가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허가지위승계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소금제조업허가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장관리선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건강보험 변동신고서	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	익년 3~4월
산재보험 피보험자 전보신고서	연간	근로복지공단	행정자료	익년 1~2월
고용보험 근로자 전근신고서	연간	근로복지공단	행정자료	익년 1~2월
국민연금자료	연간	국민연금공단	행정자료	익년 3~4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	익년 3~4월

통계 작성목적 부합 여부 및 한계점

○ 귀농어·귀촌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21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작성

- (모집단)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기간(매년 T-1년.11.1 ~ T년.10.31.)에 읍면으로 전입한 사람을 모집단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국내인구이동자료의 주소지 정보(행정기관코드) 및 전입일자(변동일자)를 활용하여 해당기간 모든 읍·면 전입자 자료를 추출하여 작성 목적에 부합

- (귀농인통계) 모집단 대상 중 신규로 농업인에 등록된 사람을 추출하기 위해 농업인 명부 3종(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대장) 모두를 활용하고 신규 귀농인 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작성목적에 부합
- (귀어인통계) 모집단 대상 중 신규로 어업인에 등록된 사람을 추출하기 위해 어업인 명부 12종(어업허가등록명부, 어업면허등록명부, 양식업허가등록명부, 어업신고등록명부, 내수면어업등록명부, 수협조합원가입명부, 수협조합원탈퇴명부,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전자어업허가증명부, 어업허가지위승계명부, 소금제조업허가명부, 어장관리선등록명부) 모두를 활용하고 신규 귀어인의 겸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작성목적에 부합
- (귀촌인통계) 모집단 중 귀촌인 비대상(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일시적 이동자)을 제외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적부, 군인사병명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 고용보험의 근로자 전보신고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통계 작성목적에 부합

2. 자료수집체계

□ 자료수집을 위한 법적근거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국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93002호)로 통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V. 통계처리 및 분석

1. 통계작성 결과

1-1. 주요 통계 목록

통계별 항목	통계표 목록
1. 귀농(14개)	
□ 가구원 현황	1-1. 성별·연령별 귀농가구원 현황 1-2. 시도별(시군별)·성별 귀농가구원 현황 1-3. 시도별(시군별)·연령별 귀농가구원 현황
□ 겸업여부	1-4. 시도별 연령별·겸업여부 귀농인 현황
□ 이동현황	1-5. 시도별 귀농전 거주지역별 귀농가구원 현황 1-6. 시도별·이동유형별 귀농가구원 현황
□ 가구현황	1-7. 시도별·성별·연령별 귀농가구주 현황 1-8. 시도별(시군별)·귀농가구원수별 귀농가구 현황
□ 구성형태	1-9. 시도별(시군별)·가구구성형태별 귀농가구 현황
□ 작물현황	1-10. 시도별 작물별 작물재배 귀농가구 현황 1-11. 시도별 작물별 가구당 평균재배면적 현황 1-12. 재배면적규모별 작물재배 귀농가구 현황 1-13. 시도별 농지경영형태별(자경·임차) 작물재배 귀농가구 현황
□ 가축현황	1-14. 시도별 가축별 축산 귀농가구 현황
2. 귀어(10개)	
□ 가구원수	2-1. 성별·연령별 귀어가구원 현황 2-2. 시도별·성별 귀어가구원 현황 2-3. 시도별·연령별 귀어가구원 현황
□ 겸업여부	2-4. 연령별·겸업여부 귀어인 현황
□ 이동현황	2-5. 시도별 귀어전 거주지역별 귀어가구원 현황 2-6. 시도별·이동유형별 귀어가구원 현황
□ 가구현황	2-7. 시도별·성별·연령별 귀어가구주 현황 2-8. 시도별·귀어가구원수별 귀어가구 현황
□ 구성형태	2-9. 시도별·가구구성형태별 귀어가구 현황
□ 종사업종	2-10. 시도별 종사업종별 귀어인 현황
3. 귀(산)촌(9개)	
□ 가구원수	3-1. 성별·연령별 귀(산)촌인 현황 3-2. 시도별(시군별)·성별 귀(산)촌인 현황 3-3. 시도별(시군별)·연령별 귀(산)촌인 현황
□ 이동현황	3-4. 시도별 귀촌전 거주지역별 귀(산)촌인 현황 3-5. 시도별 이동유형별 귀(산)촌인 현황
□ 가구수	3-6. 시도별·성별·연령별 귀(산)촌가구주 현황 3-7. 시도별(시군별) 가구원수별 귀(산)촌가구 현황
□ 가구구성	3-8. 시도별(시군별) 가구구성형태별 귀(산)촌가구 현황
□ 전입사유	3-9. 시도별 전입사유별 귀(산)촌가구 현황

1-2. 주요 통계 결과

□ 귀농인 통계

- (가구규모) 2022년 귀농가구는 12,411가구로 전년(14,347가구)보다 1,936가구(△13.5%) 감소
 -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6명으로 전년(1.38명)보다 0.02명 낮게 나타남
 - * 가구수 전년비(%) : ('19) △4.5 → ('20) 9.3 → ('21) 14.9 → ('22) △13.5

<귀농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 (가구주특성) 귀농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6.4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7.1%로 나타남
 -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가 31.6%, 60대가 38.2%로 50~60대가 69.8%를 차지

<귀농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 (가구특성) 귀농가구의 75.3%는 1인가구로 나타남
 - 귀농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80.3%,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9.7%를 차지

<귀농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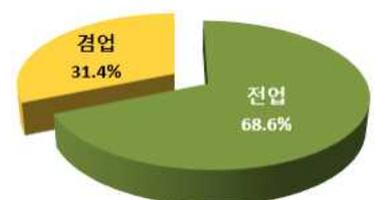
- (가구원규모) 귀농가구원은 16,906명으로 전년(19,776명)보다 2,870명(△14.5%) 감소
 - 귀농인은 12,660명으로 전년(14,461명)보다 1,801명(△12.5%) 감소하였고, 동반가구원은 4,246명으로 전년보다 1,069명(△20.1%) 감소

<귀농인 및 가구원 규모>



- (전·겸업)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8,679명(68.6%)이고, 다른 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3,981명(31.4%)임

<귀농인의 전·겸업별 구성비>



□ 귀어인 통계

○ (가구규모) 2022년 귀어가구는 951가구로 전년(1,135가구)보다 184가구(△16.2%) 감소

- 귀어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2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 가구수 전년비(%) : ('19) △1.4 → ('20) △0.8 → ('21) 26.5 → ('22) △16.2

<귀어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 (가구주특성) 귀어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3.4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9.1%로 나타남

-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가 32.4%, 60대가 29.2%로 50~60대가 61.6%를 차지

<귀어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 (가구특성) 귀어가구의 77.3%는 1인가구로 나타남

- 귀어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가 72.2%, 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어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27.8%를 차지

<귀어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



○ (가구원규모) 귀어가구원은 1,256명으로 전년(1,497명)보다 241명(△16.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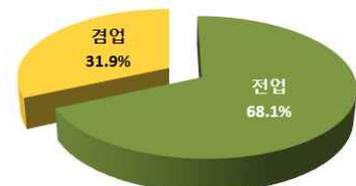
- 귀어인은 1,023명으로 전년(1,216명)보다 193명(△15.9%) 감소하였고, 동반가구원도 233명으로 전년보다 48명(△17.1%) 감소

<귀어인 및 가구원 규모>



○ (전·겸업) 귀어인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97명(68.1%)이고, 다른 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어인은 326명(31.9%)임

<귀어인의 전·겸업별 구성비>



□ 귀촌인 통계

○ (가구규모) 2022년 귀촌가구는 318,769가구로 전년(363,397가구)보다 44,628가구(△12.3%) 감소

- 귀촌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2명으로 전년(1.36명)보다 0.04명 낮게 나타남

* 가구수 전년비(%) :

('19) △3.3 → ('20) 8.7 → ('21) 5.3 → ('22) △12.3

<귀촌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 (가구주특성) 귀촌가구의 평균연령은 45.7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0.3%로 나타남

-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1.1%, 50대가 18.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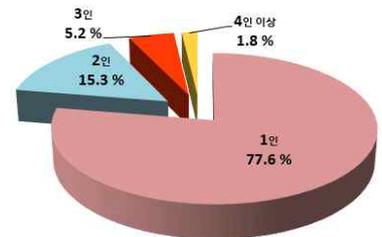
<귀촌가구의 연령별 구성비>



○ (가구특성) 귀촌가구의 77.6%는 1인가구로 나타남

- 귀촌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가 70.2%,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29.8%를 차지

<귀촌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



○ (가구원규모) 귀촌인은 421,106명으로 전년(495,658명)보다 74,552명(△15.0%) 감소

- 평균연령은 43.4세였으며,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25.1%, 30대 20.4%, 50대 17.4% 등의 순임

<귀촌인 및 가구원 규모>



○ (전 거주지역)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도 105,857명(25.1%)으로 가장 많고, 서울 59,072명(14.0%), 경남 30,509명(7.2%)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전체의 43.2%를 차지

2. 결과의 적절성

□ 최종 산출통계에 대한 검증 방법

-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귀농어·귀촌인 통계”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통계와의 비교는 없고, 시산결과에 대한 대내외 전문가 및 관련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공표

Ⅵ.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및 통계 공표의 적격성

○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귀농인통계, 귀어인통계, 귀촌인통계 각각 구분하여 공표
: 귀농인·귀촌인통계의 경우 지역을 시도별·시군별로 분류하여 공표
: 귀어인통계의 경우 지역을 시도별로 분류하여 공표

○ 통계공표의 적정성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작성하는 행정통계로서 국내인구이동자료로부터 모집단 전체 입수하여 전수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작성함, 행정통계는 전수조사로서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생기는 표본오차나 변동계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귀농인의 경우 매년 10,000명 이상, 귀촌인의 경우 매년 400,000명 이상 추출되므로, 시·군 단위로 공표하여도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이 없으므로 시·군 단위로 공표하는 것이 적정함
- 귀어인의 경우 매년 1,000명 정도 추출되어 시·군 단위로 공표할 경우 3명 이하의 귀어인수가 나타나는 시·군이 많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이 있어 시·도 단위로 공표하는 것이 적정함

□ 주요통계표 등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 귀농인통계

<귀농가구 및 가구당 평균 귀농가구원수>

- ☞ (귀농가구 규모) 2022년 귀농가구는 12,411가구로 전년(14,347가구)보다 1,936가구(△13.5%) 감소
: 시도별로 경북이 2,530가구(20.4%)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1,966가구), 충남(1,562가구), 경남(1,502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36명으로 전년(1.38명)보다 0.02명 감소



<귀농가구원 규모>

- ☞ (귀농가구원 규모) 귀농가구원은 16,906명으로 전년보다 2,870명(△14.5%) 감소
- : 귀농인은 12,660명으로 전년(14,461명)보다 1,801명(△12.5%) 감소, 동반가구원은 4,246명으로 전년(5,315명)보다 1,069명(△20.1%) 감소



○ 귀촌인통계

<귀촌가구 및 가구당 평균 귀촌인수>

- ☞ (귀촌가구 규모) 2022년 귀촌가구는 318,769가구로 전년(363,397가구)보다 44,628가구(△12.3%) 감소
- : 시도별로 경기가 85,174가구(26.7%)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37,919가구), 경북(36,745가구), 경남(32,918가구) 등의 순
- :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32명으로 전년(1.36명)보다 0.04명 감소



<귀촌인, 귀촌가구주 및 동반가구원수>

- ☞ (귀촌인 규모 및 연령) 귀촌인은 421,106명으로 전년에 비해 74,552명(△15.0%) 감소, 귀촌가구주는 318,769명으로 전년보다 44,628명(△12.3%) 감소하고, 동반가구원은 102,337명으로 29,924명(△22.6%) 감소
- : 평균 연령은 43.4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25.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0.4%로 다음을 차지



○ 귀어인통계

<귀어가구 및 가구당 평균 귀어가구원수>

- ☞ (귀어가구 규모) 2022년 귀어가구는 951가구로 전년보다 184가구(△16.2%) 감소
- : 시도별로 충남이 324가구(34.1%)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297가구), 전북(107가구), 경남(84가구)의 순
- :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32명으로 전년과 동일



<귀어가구원 규모>

- ☞ (귀어가구원 규모) 귀어가구원은 1,256명으로 전년보다 241명(△16.1%) 감소
- : 귀어인은 1,023명으로 전년(1,216명)보다 193명(△15.9%) 감소, 동반가구원은 233명으로 전년(281명)보다 48명(△17.1%) 감소



○ 공표되는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 도시와 농어촌 판단 기준

- ☞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동 지역 중 농어촌으로 간주하는 지역 자료가 없어 통계 작성시 도시는 동 지역으로,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간주

: 농업인/어업인 판단 자료 범위

- ☞ 법에서는 귀농인을 판단하는 조건의 하나로 농업경영체등록명부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농업인 판단 시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여 통계 작성
- ☞ 귀어인도 동일한 맥락에서 어업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감(률)이나 구성비는 원 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표 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본 자료의 귀농어·귀촌인(가구)수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자료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상주하는 귀농어·귀촌인(가구)수와 다를 수 있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 : 매년 11월 1일
- 통계작성 공표시기
 - (공표시기) 매년 6월 말 공표
 - (공표방법)
 -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보도자료 게시
 -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 통계표 수록

□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결과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행정통계로서 행정자료 입수가능성을 전제로 통계 공표일정 단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21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통계를 작성하므로 21종의 행정자료가 모두 입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 공표기간의 단축을 검토해야 함
- 특히 귀농어·귀촌인통계의 경우 해당기간(매년 T-1년.11.1 ~ T년.10.31.) 읍면 전입자를 모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10월 말까지의 자료가 지자체에서 행안부로 이관되고, 행안부에서 오류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연도의 대상자를 추출하기 때문에 모집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입수한다고 할지라도 익년도 2월까지의 기간이 필요함
- 또한 2월에 입수한 자료를 가공하여 모집단을 추출하여 농림부의 농업경영체 자료와 매칭하여 신규 농업인 자료를 추출하여, 그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농림부에서 신규 농업인에 대한 실사조사를 통해 자료 정확성을 제고한 후 통계청에 농경제 자료를 제공하므로 익년도 3~4월까지의 기간이 필요함
- 농업인 명부 3종, 어업인 명부 12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료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등록자료가 필요함으로 익년도에 해당부처에서 자료 가공 및 추출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입수 가능기간은 2~4월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일반적인 행정통계의 경우 자료 입수의 한계로 인해 전년도 기준 통계를 익년도 12월에 발표하는 것과 비교하면 귀농어·귀촌인통계의 타통계에 비해 공표기간이 매우 짧고,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자료 입수 가능기간>

자료명	작성주기	작성대상(기관)	작성형태	입수시기
국내인구이동자료	연간	행정안전부	행정자료	익년 1~2월
농업경영체등록자료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농지대장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축산업등록명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허가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면허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양식업허가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신고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내수면어업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수협조합원가입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수협조합원탈퇴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전자어업허가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업허가지위승계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소금제조업허가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어장관리선등록명부	연간	해양수산부	행정자료	익년 1~3월
건강보험 변동신고서	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	익년 3~4월
산재보험 피보험자 전보신고서	연간	근로복지공단	행정자료	익년 1~2월
고용보험 근로자 전근신고서	연간	근로복지공단	행정자료	익년 1~2월
국민연금자료	연간	국민연금공단	행정자료	익년 3~4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	익년 3~4월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

- 매년 초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 공표일정 공개
 - (공개주소 경로) 국가통계포털>서비스소개>국가통계공표일정
 - (홈페이지 주소) <http://kosis.kr/serviceInfo/statisPublicationList.do>

□ 최근 공개된 공표 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사전 공개된 공표 일정에 따라 실제 공표함

공개 내용	예정 공표일	실제 공표일	비고
2021년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6월 말	6월 23일	
2022년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6월 말	6월 22일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등의 매년 동일 적용 여부

- '15년 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법적 개념을 준용하여 작성

구분	정의
귀농어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귀촌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단,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일시적 이동자, 귀농어업인은 제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 도시와 농어촌

-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실제 동 지역 중 농어촌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 통계 작성 시 도시는 동 지역으로,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간주

○ 농업인/어업인

- 법에서는 귀농인을 판단하는 조건의 하나로 농업경영체등록명부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농업인 판단 시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통계 작성
- 어업인도 동일한 맥락에서 어업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
* 어업경영체, 전자어업허가증, 어업면허등록대장, 어업허가등록대장, 어업신고등록대장, 어선어업인허가대장, 내수면어업등록대장, 수협조합원 명부, 수협조합원 탈퇴자 명부 등

○ 귀촌인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 학생

- 법에서는 학생(초등학생~대학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학적부 미입수로 연령(만7세 이상~만19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 학적부를 사용

○ 귀농인/귀어인/귀촌인

-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조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어인 조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 귀농가구/귀어가구/귀촌가구

-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을 포함하는 가구

- 독립가구/혼합가구
 - (독립가구) 대상 기간 중 이동한 사람들만으로 가구를 구성한 경우
 - (혼합가구) 이동한 사람과 기존 거주민들이 함께 가구를 재구성한 경우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발생 원인과 이용시 고려사항

- '15년 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법적 개념을 준용하여 귀농어·귀촌인통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전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
 - * 귀어인 통계는 법 제정 후 처음으로 개발되어 시계열 단절이 없음
- 또한 귀촌인 통계는 그 개념이 크게 변경되었고, 작성 방법도 과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조사 방식에서 행정자료 기반으로 변경되어 과거 공표한 수치와는 큰 차이가 발생
- 이에 따라 과거 공표한 시계열과의 비교가 불가하여 2015년 기준 통계 작성시 2013년 기준 통계부터 소급적용하여 재작성하였으며, 동 자료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또한 귀농어·귀촌인(가구)수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자료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상주하는 귀농어·귀촌인(가구)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와 경로별 유형 및 내용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새소식>보도자료>농림어업>귀농어귀촌인통계)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농업>귀농어귀촌인통계)
- MDIS 홈페이지 : DB
 - <http://mdis.kostat.go.kr>

4-2.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연락처 : 042-481-2366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 설명자료

- 통계청 통계설명DB 홈페이지 : 통계설명자료
 - <https://meta.narastat.kr>(통계설명자료>주제별설명자료>농림어업>귀농어귀촌인통계)

5. 비밀보호 및 보안

5-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행정자료 수집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법

-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보안
 -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은 행정자료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폐기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한 보안관리 및 로그감시·분석
 - 따라서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모든 정보와 자원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외부 및 내부의 침해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
 - 개발 및 운영으로부터 사용자의 행정자료 접근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시스템과 전용 통신장비로 연결하여 인터넷이 차단된 폐쇄망 내에서 가능
-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행정자료 통합 DB 구축
 - 통계청은 개인식별번호를 대체번호로 변환한 후 행정자료 통합 DB에 등재·관리
 - 모든 암호화 과정은 국정원 인증 단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망 분리(10. 10.)를 통한 행정자료 보안조치 수립
- 입수한 행정자료는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인수담당자가 바로 파기 처리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 보호 관련 법령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시행령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 3. 통계자료의 관리·판매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의 경우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통계청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4조(자료의 비밀보호)

- ①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 ②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 자료 또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과정에서 비밀보호

- 공표 자료의 경우 시군별*로 집계·가공된 통계수치만 발표되므로 조사 응답자의 식별 가능성은 없음
 - * 귀어인은 경우는 시도별로 발표
- 귀농어·귀촌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 행정목적으로 수집된 행정자료이므로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공공용 및 승인용으로 제공하지 않고 특수목적용*으로만 제공
 -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등 지정된 방법으로 이용
 - 자료이용 계획, 목적, 이용범위를 사전 승인 받은 특정한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 되는 자료로 마이크로 이용센터에서 분석하고, 결과물(집계표)은 담당부서 승인 후 반출
 - 또한 수집된 행정자료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식별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음

5-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보안 및 접근 제한

-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보안
 -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의 행정자료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폐기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한 보안관리 및 로그감시·분석
 -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망 분리('10. 10.)를 통한 행정자료 보안조치 수립
 - 입수한 행정자료는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인수담당자가 바로 파기 처리
- 정보보안 조직 운영 및 자료관리대장 운영으로 보안 강화
 - 통계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훈령)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통계청 예규)
 - 개인정보보호지침 (통계청 예규)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강화
 - (근거) 통계청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4조(자료접근통제)
: (자료관리책임자) 인가된 PC에서 인가된 이용자만 인가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자료이용 접근권자가 자료처리과정에서 개체식별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저장(화면캡처)할 수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
: (자료이용 접근권자) 개체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 다만, 자체 보유자료와 비교, 내검, 항목대체 등에 활용키 위해 개체식별정보가 포함된 분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서약서를 자료보안책임자에게 제출, 승인 후 이용하며, 목적을 다 한 경우 파기확인서를 제출.
: (자료접근권자) 자료에 대한 활용이 종료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생성된 개체식별정보 또는 개체식별자료가 기록된 인쇄물 및 전자파일 등 생성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 통계법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 ② 통계자료의 보유·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4조(자료의 비밀보호)

- ①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 ②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항목만을 이용한다.
- ④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다.
- ⑤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명시된 이용자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인원 : 6명

부처명	부서	직급	인원	구체적인 통계업무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5급	1명	귀농어·귀촌인통계 업무 총괄
		7급	1명	귀농어·귀촌인통계 작성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5급	1명	귀농인통계 업무 총괄 및 귀농·귀촌인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임	1명	귀농·귀촌인실태조사
해수부	어촌어항과	4급	1명	귀어인통계 업무 총괄
		7급	1명	귀어인통계 어업인자료 관리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 방법

-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는 통상적인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조직 및 인력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
- 통계의 연혁, 자료입수, 처리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인수인계

외부 위탁 또는 용역사업으로 통계 생산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예산

(귀농어·귀촌인통계_행정통계 관련)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담당공무원이 기획, SAS 프로그램 작성 및 시산, 공표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므로 별도 예산 없음

3.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 입력, 처리, 집계, 추정, 분석 등의 시스템 전산장비

- 자료연계 :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자료와 행정자료간 자료를 연계하여 귀농어·귀촌인을 선정하고 가구·직업, 주소지 정보를 보완하여 가구DB, 직업DB를 작성
- 집계 및 분석 : 서버용 SAS 프로그램(SAS Enterprise guide 82) 활용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2018년부터 귀농인의 가축사육 현황 및 귀어인의 업종별 종사현황을 추가 작성하여 귀농어인의 종사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어인의 안정적 정착 및 지원 강화

5.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지적사항	해명, 개선 등의 조치결과
○지방 살면 당신도 귀촌인...영터리 귀농귀촌 통계(교육, 주택 등 사유로 수도권 위성도시(읍·면지역)로 이주한 경우도 귀촌인으로 분류) [아주경제, '16. 7. 5.]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별 7개 항목자료를 입수하여 전입사유별 귀촌가구 현황 작성 및 공표
○귀농귀촌 인구 50만명?...역귀성 빠진 수실 통계 지적 [머니투데이, '17. 6.30.]	○행정기관코드를 활용하여 3년간 귀농어·귀촌인 가구주 명부를 주민등록자료와 주소지 이동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도시재이주자 현황 작성 검토 중